

## 有望先進技術企業 育成方案

(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-80호)

### 1. 목 적

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중 기술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관 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세계 일류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'94. 4. 24(상공부 공고 제91-21호) 공 고한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육성방 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.

1993. 10. 7

상공자원부장관

- 2000년대 선진산업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중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세계일류 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.
- 시행근거
  -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(기술의 향상)
  - 1990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
  - 1990년도 상공부 주요업무계획 (대통령께 보고)
  -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효율화방안('90. 1)
  - 新경제 5개년계획('93. 4)
- 사업목표
  - 1999년까지 세계일류 기술수준의 유망중소기업을 2,000개이상 육성

## 2.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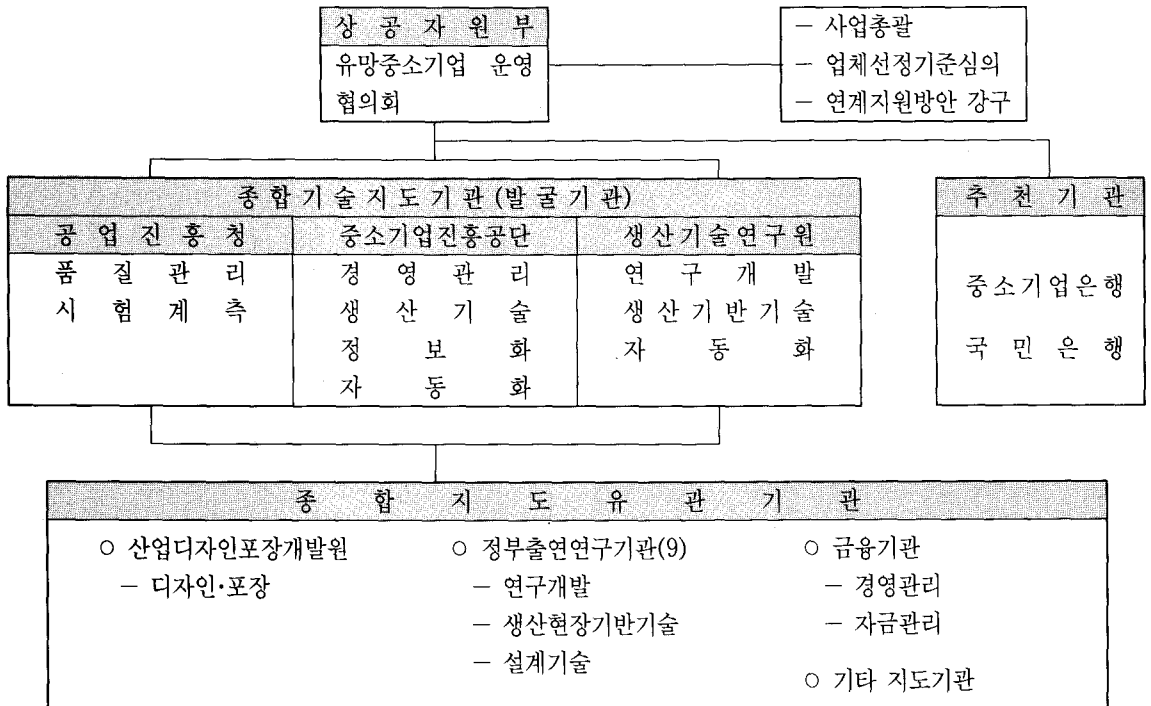
- 가.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발굴된 유망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주력함
- 나. 대상분야별로 기술력향상을 위한 의지가 투철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술

지도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함

- 다.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정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정된 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집중지원함
- 라.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자주적인 기술개발노력을 우선 지원함

## 3. 추진체계

### 가. 유관기관협력체제



### 나. 유망중소기업 운영협의회 운영

#### (1) 구 성

- 위원장: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
- 위 원: 관계부처 과장 및 유관기관 임

직원(상공자원부, 경제기획원, 재무부, 내무부, 과학기술처, 공업진흥청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생산기술연구원, 대한무역진흥공사, 금융기관등)

(2) 기 능

- 유망중소기업의 발굴·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
-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선정기준 심의 및 지원에 관한사항 협의
- 기타 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협의

4.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지정

가. 지정 대상업체

【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발굴된 유망중소기업중 다음요건을 충족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】

- (1) 직전 2개년간 평균매출액의 3%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함
- (2)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함

나. 지정대상 제외업체

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망중소기업은 유망선진기술기업체 지정에서 제외함】

- “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”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- 51%이상 외국인 투자업체
-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
-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%미만인 업체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
- 최근 결산년도의 부채비율이 800%이상인 업체(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제준비금은 자본금으로 본다)

- 실태조사 결과 평점합계가 50점 미만인 업체

다. 지정대상업체 및 분야

- (1)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대상 업종 및 분야는 제조업 관련업종 및 분야에 한함
- (2) 우선지정대상업종 및 분야

【종합기술지도 신청업체가 당해년도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 및 분야에서 우선 지정함】

- 한국표준산업분류(제조업)

-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24. 화학, 화학물           | 24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 |
| 25 고무, 플라스틱           | 251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252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|
| 26. 비금속광물 제품          | 261.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269.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|
| 27. 제1차 금속 제품         | 271 철강산업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272 비철금속 산업         |
| 28 조립금속 제품등           | 291 기계제조업           |
| 31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33 기타 광학측정, 제어용기기 제조업 |                     |
| 35 운수장비 제조업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- 기술선진화 기반조성 분야
    - 생산현장기반기술 분야
      - 도금, 도장, 열처리, 용접, 금형, 주·단조, 염색가공
    - 가공정밀도 분야
    - 정보화 분야
    - 자동화 분야
  - 우선지정대상업종 및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

세계일류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업종 및 분야는 지정대상으로 포함하되 전체의 10%이내에서 지정함

**라. 지정절차**

- (1) 상공자원부장관은 『유망선진기술기업체 육성방안』을 공고함
- (2) 유망선진기술기업체로 지정되고자 하는 유망중소기업은 직접 또는 『유망선진기술기업의 추천기관』을 통하여 『유망선진기술기업의 발굴기관』에 종합기술지도를 신청
- (3) 각 발굴기관은 관계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『현장실태조사 및 정밀진단』을 실시하고 기술지도 대상업체 및 분야별 지도과제를 확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
- (4) 상공자원부장관은 기술지도대상업체를 『유망중소기업 운영협의회』의 협의를 거쳐 『유망선진기술기업』으로 지정·공고하고 이들 명단을 각 지원 유관기관에 통보함
- (5) 『유망선진기술기업의 발굴기관』은 정부출연기관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도일수·분야를 결정

**5. 유망선진기술기업의 졸업**

**가. 졸업대상**

-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후 일정기간 지원한 업체 및 기업규모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업체

**나. 졸업기준**

-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후 3년간 지원한 업체

- 지정후 1년이상 지원한 업체로서 일정규모 이상 성장한 업체
  -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
  - 추가 『지도과제』를 발굴하지 못한업체
  - 발굴기관이 판단하여 『선진기술』이 축적된 업체

※ 『유망중소기업』을 졸업한 기업은 『유망선진기술기업』의 졸업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졸업한 것으로 간주

**다. 졸업유예업체**

- 일정기간 지원하여 졸업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중 지원기간내에 기술개발, 품질고급화, 수출증대등 지원에 따른 성과가 상당한 업체로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『유망선진기술기업』은 1년의 기간내에 졸업을 유예할 수 있음
  - 중소기업 범위 초과업체, 지원성과가 미약한 업체, 자력성장기반 확립업체는 유예대상에서 제외
  - 졸업유예제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

**라. 졸업시기**

- 지원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한 업체 및 자력성장기반 구축업체 : 분기말

**6. 유망선진기술기업에 대한 지원**

**가. 기술력 향상지원(자체지원)**

- (1) 현지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: 각 발굴기관 별 실시
  - 전문가 구성: 발굴기관 직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

○ 분야별 지원과제 도출

기술개발분야, 기술지도분야, 시설개선편야, 정보제공분야, 경영지원분야

(2) 종합기술지도

간사기관	지도과제	유 관 기 관
공업진흥청	품질관리 시험계측	○ 정부출연연구기관 ○ 대학(연구소)
중소기업 진흥공단	생산애로기술	○ 국립(지방)공업기술원
	정보화	○ 한국생산성본부
	자동화	○ 금융기관
생산기술 연구원	경영관리	○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
	연구개발	○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
	생산개발기술	○ 기타 지도기관
○ 해외초청 및 파견 기술지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되 KOTRA 해외조직망 활용 - 내국인 기술지도 인력이 부족한 첨단분야 - 『유망선진기술기업』이 희망하는 분야		

지 원 기 관	주 요 지 원 내 용
금 융 기 관	○ 우대금리 지원, 경영·기술지도 지원
중소기업진흥공단	○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지원,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
공 업 진 흥 청	○ KS표시 허가등 각종 인·허가시 우대
공 업 기 술 원	○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원,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
지 방 자 치 단 체 (시·도)	○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, 지방중소기업시책자료 제공
대한무역진흥공사	○ 수출 incubator사업지원
한국무역협회	○ 『해외시장개척기금』의 지원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	○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우대 지원
생산기술연구원	○ 생산기술지도 및 정보제공, 선진기술지도
산업기술정보원	○ 기술, 특허, 시장정보지원, 타당성 조사 지원등
정 부 출 연 연구 기 관	○ 기술지원,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
한국표준협회	○ 품질경영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
중 합 상 사 (8개사)	○ 대기업의 물품구매 정보제공,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·기술지원

나. 연계지원

- 발굴기관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타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『유망중소기업전담반』에 연계지원 요청
-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결과를 『지원요청기관』 및 『유망중소기업전담반』에 보고

7. 경과조치

- '91. 12. 19, '92. 8. 17일 및 '93. 8. 28일 지정·공고된 『기술선진화 중소기업』은 이 공고에 의하여 『유망선진기술기업』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**전안**